

의안번호	2210055
의 퇴 인	이성권의원
회 답 일	2025. 7. 22.
추계번호	25B2545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드론산업의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소방을 포함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, 방재·방역·보건·측량·감시·구호 등의 공공부문</u> 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<u>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</u> (제2항)	의무·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 (드론산업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 공공부문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(안 제3조제2항)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부문에 ‘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1)에 따른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’를 추가하고,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, 방재·방역·보건·측량·감시·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- 참고로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우주항공청 등은 현재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 공공부문에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의 일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공공부문에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소관 부처	구 분		사업내용	예산 (2025년)
국토교통부	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(3637-324)	드론 상용화 지원	● 드론 분야 신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유망기업 지원·육성을 통해 드론 우수기술의 조기 사업화·상용화 촉진 - 소방특화 고중량 드론 도입 및 국산화, 공항 조류대응 AI 드론 개발 등 공공서비스 분야 드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포함	14,800
		드론 실증도시 구축	● 지역 내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 및 실증 추진 - 사회적 요구가 크고,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(도서·산간지역 드론 물류배송, 사회안전 중화물 운송 등)에 대한 실제 수요 창출 및 조기 상용화 추진	13,000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·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

소관 부처	구 분	사업내용	예산 (2025년)
행정안전부	드론·SAR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기술 개발 (2931-527)	• 급경사지 붕괴 징후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채널 드론 활용 등 기술개발	1,500
우주항공청	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 (1733-301)	•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비행하며 실시간 재난 영상과 기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 개발 지원	6,800

자료: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우주항공청의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Ⅱ-1)」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부문에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추가하고, 공공부문에서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,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 향후 실시될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